# 參考資料


고평석,「北韓保險制度의 體系와 그 槪要」,『보험개발연구』통권 제5호, 보험개발원, 1992. 3

———,「北韓의 責任保險制度에 관한 考察」,『보험조사월보』제17권 제10호, 보험감독원, 1994. 10

———,「北韓의 再保險制度와 再保險交流의 可能性」,『보험학회보』제113호, 보험학회, 1994. 11

김기홍,「남북한 무역의 비교우위와 동아시아 경제권이 남북한 경제통합에 미치는 효과」,『통일경제론』, 도서출판 해남, 1997, 455-460면.

김상겸,『北韓의 交易現況과 對外經濟政策』, 정책자료 94-0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 10

———,「北韓의 外國人投資關聯 法令 分析 및 評價」,『통일연구논총』1993 제2권 1호, 민족통일연구원, 1993. 7.

김용구・박성훈,『통일이후 동독경제의 산업구조변화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

김원식, 베르너 푸쉬라 공저, 『통독의 경제적 평가와 한반도 통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1993.

김정수, 『해상보험론』, 박영사, 1986.

남궁영,「북한의 대외 경제정책 변화의 전망」,『구조전환기의 남북한 경제 협력』, 현대경제사회연구원, 1995.9.

———,「북한 경제 개방 정책의 한계와 가능성:경제특구정책을 중심으로」,『통일경제』 1997년 7월호.

박정동,『북한의 경제특구-중국과의 비교』, 한국개발연구원, 1996.

동용승,「효율적인 대북투자방안」,『북한경제 '96. 12.』,한세정책연구원.

박유환,『북한의 금융제도와 남북한 금융협력방안』, 한국수출입은행, 1997.5.

유한수 · 이영선,『북한진출 기업전략』, 도서출판 오름, 1997.

이상만,『통일경제론』, 형설출판사, 1994.

이종원외,『통일경제론』, 해남, 1997.

전창원,『무역보험실무』, 일신사, 1994.

전홍택 · 김상기,『북한경제의 현황과 개혁전망』, 한국개발연구원, 1997.

정재욱, 정영철,「OECD회원국의 기업연금제도」, 『Insurance Business Report』통권 제2호,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1997.

학민사,『南北韓의 交流 · 協力關聯 法令』, 1994. 1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나진 · 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환경』, 1995.

관세청 · 한국무역협회,『주요국의 수입통관 안내』, 1996.1.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북한),『황금의 삼각주 나진 · 선봉 법규집』(1), (2), (3), 1994.

대한무역진흥공사,『북한뉴스레타』, '96. 8월, 9월, '97. 1월, 5월, 6월.

대한재보험,『북한보험산업의 현황』, 1996.10.

보험감독원,『북한보험제도』, 1997.2.

보험개발원,『적하보험 사고현황』, 1996.12.

———,『적하보험요율서』, 1997.3.1.

손해보험협회,『해상보험약관집(적하보험)』, 1997.

통계청,『국제통계연감』, 1997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1996.11.

———,『중국의 주요경제사회지표』, 1996.8

통일원 교류협력국,『남북교류협력 동향』, 제71호 1997.5.
———, 『북한의 외국인 투자관련 법규집』, 1995.
통일교육원,『북한이해』, 1997.
———,『통일문제이해』, 1997.
한국사회문화연구원 · 한세정책연구원,『남북경협 공개토론회』, 1997.9.22.
한세정책연구원, 『북한경제』, '96.12, 97.4
한양대학교 중소연구소, 『월간 북방동향』, '97. 1, '97. 5.

Allianz AG,「Probleme bei dem Übergang von der Planwirtschaft zur Marktwirtschaft in Ostdeutschland」, 1995.
Baden, Gerd-Uwe,「Probleme bei dem Übergang von der Planwirtschaft zur Marktwirtschaft in Ostdeutschland」, 1995.
Bader, Heinlich,「Entstehung, Entwicklung und Perspektiven der Staatlichen Versicherung der DDR」, 1990.
Euromoney Magazine, March 1997, *Country Risk Ratings 1997*
Deltchig, Horst「통일독일의 경험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제언」, 한국경제신문 북한경제연구소(번역문), 1996.
Gesamtverbandes der Deutschen Versicherungswirtschaft(GDV),「Deutsche Einigung und Versicherungswirtschaft」, 1991.
Gesamtverbandes der Deutschen Versicherungswirtschaft(GDV),「Statistisches Taschenbuch der Versicherungswirtschaft」, 1997.
Peiner, Wolfgang,「Finazdienstleistungen einer Versicherunngsgruppe für den ostdeutschen Markt」, 1993.

# [부록 1] 남북한 주요 경제지표의 비교

| | 단위 | 북한(A) | 한국(B) | B/A(배) |
|---|---|---|---|---|
| 1. 인 구 | 천명 | 23,558 | 45,545 | 1.9 |
| 2. 명목 GNP | 억달러 | 214(223) | 4,804 (4,526) | 22.4 (20.3) |
| 3. 1인당 GNP | 달러 | 910(957) | 10,548(10,037) | 11.6 (10.5) |
| 4. 경제성장률 | | | | |
| GDP | % | -3.7(-4.6) | 7.1 (8.9) | - |
| GNP | % | -3.7(-4.5) | 6.9 (8.7) | - |
| 5. 대외경제 | | | | |
| 무역총액 | 억달러 | 19.8 | 2,800.5 | 141.4 |
| (수출) | " | 7.3 | 1,297.2 | 177.7 |
| (수입) | " | 12.5 | 1,503.4 | 120.3 |
| (무역액/명목GNP) | % | 9.3 | 58.3 | - |
| 대미환율 | 원/달러 | 2.14 | 804.78 | - |
| 외채 | 억달러 | 120.0 | 1,044.7 | 8.7 |
| <순외채> | 억달러 | N.A. | 346.5 | - |
| (외채/명목GNP) | % | 56.1 | 21.7 | - |
| 6. 예산규모 | 억달러 | N.A. | 720.2* | - |
| 군사비 | " | N.A. | 158.3* | - |
| 7. 에너지사업 | | | | |
| 석탄 | 만ton | 2,100 | 495 | 0.2 |
| 발전용량 | 만kW | 739 | 3,572 | 4.8 |
| 발전량 | 억kWh | 213 | 2,055 | 9.6 |
| 원유도입량 | 만ton | 94 | 9,818 | 104.4 |

주 : ( )내는 '95년도 계수, N.A.는 자료입수 불가능.

* 한국의 예산규모는 중앙정부 일반회계 기준임.

자료 : 한국은행, 「1996년 북한 GDP 추정결과」보도자료, 1997.7.

| | 단위 | 북한(A) | 한국(B) | B/A(배) |
|---|---|---|---|---|
| 8. 농수산물 생산량 | | | | |
| 곡 물 | 만ton | 369.0 | 614.5 | 1.7 |
| (쌀) | " | 134.0 | 532.3 | 4.0 |
| 수 산 물 | " | 87.6 | 324.4 | 3.7 |
| 9. 광산물 생산량 | | | | |
| 철 광 석 | 만ton | 344.0 | 22.1 | 0.06 |
| 비 철 금 속 | " | 11.6 | 62.1 | 5.4 |
| 10. 중화학공업 생산량 | | | | |
| 자 동 차 | 만대 | 0.85 | 281.3 | 330.9 |
| 조 선 | 만G/T | 5.0 | 779.8 | 156.0 |
| 강 철 | 만ton | 120.8 | 3,890.3 | 32.2 |
| 시 멘 트 | " | 379.0 | 5,726.0 | 15.1 |
| 비 료 | " | 95.6 | 429.4 | 4.5 |
| 11. 경공업 생산량 | | | | |
| 직 물 | 억$m^3$ | 1.5 | 34.4 | 22.9 |
| 화 섬 | 만ton | 5.6 | 203.0 | 36.3 |
| 12. 사회간접자본 | | | | |
| 철도 총연장 | Km | 5,112 | 6,559 | 1.3 |
| 도로 총연장 | Km | 23,369 | 82,342 | 3.5 |
| 항 만 능 력 | 만ton | 3,501 | 29,526 | 8.4 |
| 선 박 보 유 | 만ton | 92.1 | 699.3 | 7.6 |

# [부록 2] 북한보험회사(국내, 해외지사) 주소

**Korea Foreign Insurance Co.**
Head Office
Phyongchon District
Pyongyang
DPR of Korea
Tel : +850 2 816 024 Fax : +850 2 814 464
Telex : 36014 BOHOM KP

**Korea Foreign Insurance Co.**
Representative office - France
123 rue des Tennerolles
92210 St Cloud
France
Tel : +33 1 47 7172 63 Fax : +33 1 46 02 28 06
Telex : 633589 KFIC F

**Korea Foreign Insurance Co.**
Representive office - Germany
Brotkoppel 11
D-22393 Hamburg
Germany
Tel : +49 40 601 86 68 Fax : +49 40 601 07 56
Telex : 211310 KFIC D

**Korea Foreign Insurance Co.**
Representive office - Switzerland
Unt. Batterieweg 35
Switzerland
Tel : +41 61 361 2425 Fax : +41 61 361 1146
Telex : 964189 KFIC CH

**Korea Foreign Insurance Co.**
Representive office - Pakistan
V-29
16th East Street
Phase 1
Defence Housing Authority
Karachi
Pakistan
Tel : +92 21 543 830 Fax : +92 21 566 1890
Telex : 29543 KFIC PK

**Korea Foreign Insurance Co.**
Representive office - Venezuela
Av. Ppal de Macaracuay con Av. Topo
Murachi Qtr.
C-415 Urb. de Macaracuay
Caracas
Venezuela
Tel : +58 14 223 824 Fax : +58 2 256 3636
Telex : 25245 MUYEG VC

# [부록 3] 북한의 잠재보험료 추정과정

## * 기본모형

$$Y_i = \alpha + \beta_i x_{1i} + \beta_2 x_{2i} + \ldots\ldots\ldots\ldots + \beta_k x_{ki} + \varepsilon_i$$

$$i = 1, 2, 3, \ldots\ldots, n$$

## * Program file

```
data pre;
infile 'f:\user\sonbo\nk.prn';
input nat $ pre non pop gdp pgdp;
lnpre=log(pre); lnnon=log(non); lnpop=log(pop);
lngdp=log(gdp); lnpgdp=log(pgdp);
proc reg;
model lnpre=lnpop lnpgdp;
model lnnon=lnpop lnpgdp;
run;


data epre;
set pre;
epre=-10.271359+0.890677*lnpop+1.060622*lnpgdp;
enon=-9.595324+0.836274*lnpop+0.990275*lnpgdp;
epre=exp(epre); enon=exp(enon);

proc print; run;
```

*** Output**

**SAS 17:02 Monday, October 6, 1997**

**MODEL 1**

**Dependent Variable: LNPRE (생보+손보)**

Analysis of Variance

| Source | DF | Sum of Squares | Mean Square | F Value | Prob>F |
|---|---|---|---|---|---|
| Model | 2 | 42.65862 | 21.32931 | 53.929 | 0.0001 |
| Error | 29 | 11.46974 | 0.39551 | | |
| C Total | 31 | 54.12835 | | | |

| | | | |
|---|---|---|---|
| Root MSE | 0.62889 | R-square | 0.7881 |
| Dep Mean | 7.13928 | Adj R-sq | 0.7735 |
| C.V. | 8.80894 | | |

Parameter Estimates

| Variable | DF | Parameter Estimate | Standard Error | T for H0: Parameter=0 | Prob > \|T\| |
|---|---|---|---|---|---|
| INTERCEP | 1 | -10.271359 | 1.74167761 | -5.897 | 0.0001 |
| LNPOP | 1 | 0.890677 | 0.08777097 | 10.148 | 0.0001 |
| LNPGDP | 1 | 1.060622 | 0.13197019 | 8.037 | 0.0001 |

**MODEL2**

**Dependent Variable: LNNON(손보)**

Analysis of Variance

| Source | DF | Sum of Squares | Mean Square | F Value | Prob>F |
|---|---|---|---|---|---|
| Model | 2 | 37.51940 | 18.75970 | 71.343 | 0.0001 |
| Error | 29 | 7.62557 | 0.26295 | | |
| C Total | 31 | 45.14497 | | | |

| | | | |
|---|---|---|---|
| Root MSE | 0.51279 | R-square | 0.8311 |
| Dep Mean | 6.70854 | Adj R-sq | 0.8194 |
| C.V. | 7.64379 | | |

Parameter Estimates

| Variable | DF | Parameter Estimate | Standard Error | T for H0: Parameter=0 | Prob > \|T\| |
|---|---|---|---|---|---|
| INTERCEP | 1 | -9.595324 | 1.42012669 | -6.757 | 0.0001 |
| LNPOP | 1 | 0.836274 | 0.07156657 | 11.685 | 0.0001 |
| LNPGDP | 1 | 0.990275 | 0.10760568 | 9.203 | 0.0001 |

* 국가별 기초자료 및 회귀분석 결과

| OBS | NAT | PRE | NON | POP | GDP | PGDP | LNPRE |
|---|---|---|---|---|---|---|---|
| 1 | 북한 | . | . | 23917 | 223 | 932 | . |
| 2 | 멕시코 | 3709 | 2454 | 93674 | 2905 | 3101 | 8.21852 |
| 3 | 아르헨티나 | 4920 | 3685 | 34587 | 2819 | 8150 | 8.50106 |
| 4 | 칠레 | 2081 | 861 | 14262 | 673 | 4719 | 7.64060 |
| 5 | 콜롬비아 | 1816 | 1470 | 35101 | 809 | 2305 | 7.50439 |
| 6 | 베네주엘라 | 1332 | 1299 | 21844 | 600 | 2747 | 7.19444 |
| 7 | 우루과이 | 311 | 215 | 3186 | 178 | 5587 | 5.73979 |

| OBS | LNNON | LNPOP | LNGDP | LNPGDP | EPRE | ENON |
|---|---|---|---|---|---|---|
| 1 | . | 10.0823 | 5.40717 | 6.83733 | **387.83** | **272.36** |
| 2 | 7.80547 | 11.4476 | 7.97419 | 8.03948 | 4682.48 | 2805.35 |
| 3 | 8.21203 | 10.4512 | 7.94414 | 9.00577 | 5372.43 | 3174.68 |
| 4 | 6.75809 | 9.5654 | 6.51175 | 8.45935 | 1367.11 | 880.96 |
| 5 | 7.29302 | 10.4660 | 6.69580 | 7.74284 | 1426.07 | 920.25 |
| 6 | 7.16935 | 9.9917 | 6.39693 | 7.91826 | 1125.84 | 736.36 |
| 7 | 5.37064 | 8.0665 | 5.18178 | 8.62820 | 430.33 | 297.31 |

---

| OBS | NAT | PRE | NON | POP | GDP | PGDP | LNPRE |
|---|---|---|---|---|---|---|---|
| 8 | 페루 | 428 | 363 | 23780 | 424 | 1783 | 6.05912 |
| 9 | 에콰도르 | 241 | 220 | 11460 | 179 | 1562 | 5.48480 |
| 10 | 과테말라 | 166 | 135 | 10621 | 148 | 1393 | 5.11199 |
| 11 | 러시아 | 4802 | 2702 | 148140 | 3576 | 2414 | 8.47679 |
| 12 | 폴란드 | 2307 | 1542 | 38388 | 1179 | 3071 | 7.74370 |
| 13 | 헝가리 | 943 | 661 | 10115 | 414 | 4093 | 6.84907 |
| 14 | 태국 | 4067 | 2130 | 58791 | 1433 | 2437 | 8.31066 |

| OBS | LNNON | LNPOP | LNGDP | LNPGDP | EPRE | ENON |
|---|---|---|---|---|---|---|
| 8 | 5.89440 | 10.0766 | 6.04973 | 7.48605 | 767.78 | 515.29 |
| 9 | 5.39363 | 9.3466 | 5.18739 | 7.35372 | 348.27 | 245.48 |
| 10 | 4.90527 | 9.2706 | 4.99721 | 7.23921 | 288.25 | 205.66 |
| 11 | 7.90175 | 11.9059 | 8.18200 | 7.78904 | 5400.20 | 3211.76 |
| 12 | 7.34084 | 10.5555 | 7.07242 | 8.02976 | 2093.77 | 1317.69 |
| 13 | 6.49375 | 9.2218 | 6.02587 | 8.31703 | 865.66 | 574.07 |
| 14 | 7.66388 | 10.9817 | 7.26753 | 7.79852 | 2394.94 | 1496.83 |

| OBS | NAT | PRE | NON | POP | GDP | PGDP | LNPRE |
|---|---|---|---|---|---|---|---|
| 15 | 말레이지 | 3651 | 1851 | 19040 | 706 | 3708 | 8.20276 |
| 16 | 필리핀 | 1123 | 636 | 67581 | 741 | 1096 | 7.02376 |
| 17 | 알제리 | 277 | 266 | 27939 | 412 | 1475 | 5.62402 |
| 18 | 짐바브웨 | 349 | 190 | 11261 | 62 | 551 | 5.85507 |
| 19 | 케냐 | 299 | 241 | 28261 | 90 | 318 | 5.70044 |
| 20 | 브라질 | 14044 | 11632 | 161790 | 7172 | 4433 | 9.54995 |
| 21 | 인도네시 | 2380 | 1456 | 197588 | 2012 | 1018 | 7.77486 |

| OBS | LNNON | LNPOP | LNGDP | LNPGDP | EPRE | ENON |
|---|---|---|---|---|---|---|
| 15 | 7.52348 | 9.8543 | 6.55962 | 8.21825 | 1369.35 | 883.50 |
| 16 | 6.45520 | 11.1211 | 6.60800 | 6.99942 | 1161.74 | 762.27 |
| 17 | 5.58350 | 10.2378 | 6.02102 | 7.29641 | 724.83 | 488.69 |
| 18 | 5.24702 | 9.3291 | 4.12713 | 6.31173 | 113.55 | 86.20 |
| 19 | 5.48480 | 10.2492 | 4.49981 | 5.76205 | 143.85 | 107.97 |
| 20 | 9.36152 | 11.9941 | 8.87794 | 8.39683 | 11129.27 | 6311.73 |
| 21 | 7.28345 | 12.1939 | 7.60688 | 6.92560 | 2793.19 | 1737.83 |

---

| OBS | NAT | PRE | NON | POP | GDP | PGDP | LNPRE |
|---|---|---|---|---|---|---|---|
| 22 | 파키스탄 | 478 | 271 | 140497 | 590 | 420 | 6.16961 |
| 23 | 인도 | 6026 | 1807 | 935744 | 3014 | 322 | 8.70384 |
| 24 | 중국 | 7368 | 5043 | 1221462 | 6976 | 571 | 8.90490 |
| 25 | 이집트 | 483 | 389 | 62931 | 604 | 960 | 6.18002 |
| 26 | 이란 | 645 | 472 | 67283 | 1054 | 1567 | 6.46925 |
| 27 | 그리스 | 1884 | 964 | 10451 | 1143 | 10937 | 7.54115 |
| 28 | 대만 | 14397 | 4652 | 21304 | 2602 | 12214 | 9.57478 |

| OBS | LNNON | LNPOP | LNGDP | LNPGDP | EPRE | ENON |
|---|---|---|---|---|---|---|
| 22 | 5.60212 | 11.8529 | 6.38012 | 6.04025 | 806.10 | 543.75 |
| 23 | 7.49942 | 13.7491 | 8.01102 | 5.77455 | 3292.04 | 2040.77 |
| 24 | 8.52576 | 14.0156 | 8.85023 | 6.34739 | 7662.99 | 4497.08 |
| 25 | 5.96358 | 11.0498 | 6.40357 | 6.86693 | 947.34 | 629.85 |
| 26 | 6.15698 | 11.1167 | 6.96035 | 7.35692 | 1690.71 | 1082.06 |
| 27 | 6.87109 | 9.2545 | 7.04141 | 9.29991 | 2527.67 | 1561.50 |
| 28 | 8.44505 | 9.9667 | 7.86404 | 9.41034 | 5358.92 | 3160.07 |

| OBS | NAT | PRE | NON | POP | GDP | PGDP | LNPRE |
|---|---|---|---|---|---|---|---|
| 29 | 이스라엘 | 5010 | 2732 | 5629 | 868 | 15420 | 8.51919 |
| 30 | 쿠웨이트 | 188 | 164 | 1547 | 266 | 17195 | 5.23644 |
| 31 | 키프러스 | 323 | 159 | 742 | 85 | 11456 | 5.77765 |
| 32 | 파나마 | 267 | 200 | 2631 | 74 | 2813 | 5.58725 |
| 33 | 터어키 | 1376 | 1198 | 61945 | 1310 | 2115 | 7.22694 |

| OBS | LNNON | LNPOP | LNGDP | LNPGDP | EPRE | ENON |
|---|---|---|---|---|---|---|
| 29 | 7.91279 | 8.6357 | 6.76619 | 9.64342 | 2097.02 | 1307.82 |
| 30 | 5.09987 | 7.3441 | 5.58350 | 9.75237 | 745.03 | 494.66 |
| 31 | 5.06890 | 6.6093 | 4.44265 | 9.34627 | 251.71 | 178.98 |
| 32 | 5.29832 | 7.8751 | 4.30407 | 7.94201 | 175.26 | 128.41 |
| 33 | 7.08841 | 11.0340 | 7.17778 | 7.65681 | 2158.90 | 1358.96 |

NAT : 국가명 PRE : 총보험료(손보+생보) NON : 손해보험료
POP : 인구수(단위:천명) GDP : 국내총생산(단위:억불)
PGDP : 1인당GDP(단위:불)
LNPRE, LNNON, LNNON, LNPOP, LNGDP, LNPGDP : 각 변수의 Log값
EPRE : 추정보험료(단위:억불), ENON : 추정손해보험료(단위:억불)

# [부 록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험법

**(1995년 4월 6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채택)**

## 제1장 보험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험법은 보험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안정에 이바지한다.

제 2 조 보험은 인체보험과 재산보험으로 나눈다. 인체보험에는 생명보험, 어린이보험, 려객보험, 재해보험 같은 것이 속하며 재산보험에는 화재보험, 해상보험, 농업보험, 신용보험 같은 것이 속한다. 국가는 보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데 맞게 보험의 종류를 늘이며 보험사업이 자원성과 의무성의 원칙에서 옳바로 진행되도록 한다.

제 3 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보험사업은 국가보험기관이 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공화국의 해당 법에 따라 외국투자가와 공화국령역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도 보험사업을 할수 있다. 다른 나라 보험기업의 대표부, 지사, 대리점도 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

제 4 조 국가는 보험당사자들이 평등한 지위에서 보험계약을 맺고 리행하도록 한다.

제 5 조 국가는 보험사업을 장려하며 뜻하지 않은 사고나 자연재해로 생긴 피해와 손해에 대한 보험보상을 원만히 하도록 한다.

제 6 조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공화국령역에 있는 외국기관, 외국투자기업, 외국인이 보험에 들려는 경우 공화국령역에 있는 국가보험기관 또는 외국투자보험기업이 하는 보험에 들도록 한다.

제 7 조 국가는 보험분야에서 다른 나라의 보험기관, 국제보험기구와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 제 2 장 보험당사자

제 8 조 보험당사자는 보험자와 피보험자이다. 보험자에는 국가보험기관과 외국투자보험기업이 속하며 피보험자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맺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외국기관, 외국투자기업, 외국인이 속한다.

제 9 조 보험자는 보험사고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 또는 피해를 보상하거나 보험기간이 끝나면 보험금을 내줄 의무를 지며 피보험자는 보험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10 조 의무적인 보험과 외화로 하는 보험, 재보험을 하려는 보험자는 국가보험관리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 11 조 보험자는 해당 보험계약표기준조건, 보험료률을 만들어 국가보험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지 않은 보험계약표준조건이나 보험료률은 적용할 수 없다.

제 12 조 보험자는 년간업무결산이 끝나면 재정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정확히 만들어 국가보험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제 13 조 외국투자보험기업은 자기가 받은 보험료의 30%이상을 정해진 보험기관에 재보험하여야 한다.

제 14 조 피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피보험리익이 있어야 한다.

제 15 조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에서 정한대로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물어야 한다. 제3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맺는 자도 보험료를 물어야 한다.

제 16 조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을 때 보험대상에 대한 중요자료들을 보험자에게 정확히 알려야 한다. 피보험자는 재산보험대상의 피해와 손해를 막기 위한 계약의무를 성실히 리행하며 재산보험사고가 생기면 곧 보험자에게 알리고 손해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 3 장 보험계약

제 17 조 보험계약은 보험자와 피보험자사이에 맺는다. 제3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

제 18 조 보험당사자들은 인체보험계약을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맺어야 한다. 인체보험계약을 맺는 절차와 방법은 국가보험관리기관이 정한다.

제 19 조 보험당사자들은 재산보험계약을 해당 보험계약 표준조건에 따라 맺어야 한다. 해당 보험계약표준조건에 없는 사항은 보험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 20 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으면 보험증서를 피보험자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맺은 자에게 주어야 한다.

제 21 조 보험계약의 효력은 보험자가 피보험자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맺은 자에게서 보험료나 보험료지불담보를 받은 때부터 생긴다. 피보험자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생명보험, 어린이보험계약을 맺은 자가 정해진 기간에 보험료를 물지 않으면 보험계약의 효력은 없어지며 보험료를 다시 물면 그때부터 보험계약은 효력을 가진다.

제 22 조 재산보험계약의 대상은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하며 보험가격은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재산보험계약을 갱신하려는 보험당사자들은 보험대상의 가격을 다시 정하고 보험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23 조 재산보험계약기간에 보험대상에 미치는 위험이 변동되면 보험당사자들은 협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자는 위험이 커진데 대하여서는 덧보험료를 받으며 위험이 줄어든데 대하여서는 해당한 보험료를 돌려 주어야 한다.

제 24 조 재산보험계약기간에 보험대상의 가격이 낮아졌을 경우 피보험자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맺은 자는 보험금액과 보험료를 남은 보험기간에 해당한 몫만큼 줄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5 조 보험계약을 맺은 피보험자는 계약된 보험대상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 26 조 재산보험대상이 제3자에게 양도되면 보험계약에 따르는 당사자들의 권리의무도 함께 넘어간다. 이 경우 이미 계약에서 정한 위험이 커지게 되면 해당계약을 갱신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 27 조 재해보험, 려객보험계약 같은 것은 계약기간 도중에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그러나 생명보험, 어린이보험계약은 계약기간 도중에 취소할 수 있다.

제 28 조 보험자는 재산보험대상에 대한 피보험자의 관리정형을 료해할 수 있으며 사고요소를 발견하면 그것을 없앤데 대한 의견을 줄수 있다.

## 제 4 장 보험보상

제 29 조 보험보상은 인체보험에서는 보험금으로 재산보험에서는 보험보상금으로 보험자가 한다. 보험자는 보험보상을 계약에서 정한대로 하여야 한다.

제 30 조 보험금액은 보험보상금의 최고한계이며 보험료계산의 기초이다. 보험금액은 보험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보험보상은 보험금액을 초과하여 할 수 없다.

제 31 조 보험자는 생명보험, 어린이보험에 든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한 보험금을 주며 보험사고가 없이 보험계약기간이 끝나고 정해진 보험료를 다 문 피보험자에게는 만기보험금을 주어야 한다.

제 32 조 보험자는 려객보험, 재해보험에 든 피보험자가 사망하였거나 로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한 보험금을 주어야 한다. 로동능력감정은 해당 의료기관이 한다.

제 33 조 생명보험에 든 피보험자가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재산몰수형을 받은 경우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

제 34 조 려객보험, 재해보험, 재산보험의 경우 보험사고가 없이 보험계약기간이 끝나면 이미 받은 보험료는 보험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 35 조 피보험자는 재산보험사고가 생겼을 경우 계약에서 정한 기간안에 손해감정문건과 보험증서를 첨부한 손해보상청구서를 보험자에게 내야 한다. 보험자는 손해보상청구서를 정확히 검토하고 보험보상금을 주어야 한다.

제 36 조 보험자는 재산보험사고가 생겨 피보험자가 늘어나는 손해를 막기 위하여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제때에 대책을 세우지 않아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제 37 조 재산보험가격의 일부를 보험에 든 경우 보험보상금은 보험가격에 대한 보험금액의 비률에 따라 계산한다.

제 38 조 재산보험대상의 손해액은 손해가 생긴곳의 해당 시기의 가격

에 따라 보험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 39 조 보험자는 재산보험대상에 부분손해가 생기면 그에 해당한 금액만을 보상하며 전부손해가 생기면 보험금액의 전부를 보상한다.

제 40 조 재산보험금액의 전부를 보상한 보험자는 해당 보험대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와 리익을 전부 넘겨받는다. 그러나 재산보험금액의 일부를 보상하였을 경우에는 보상한 금액에 해당한 피보험자의 권리와 리익만을 넘겨받는다.

제 41 조 피보험자는 재산보험사고의 책임이 제3자에게 있을 경우 그로부터 손해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문건을 받아 보험자에게 내야 한다. 손해보상청구문건을 받지 못한 보험사는 손해보상금을 주지 않는다.

제 42 조 전쟁 또는 그와 류사한 사변으로 생긴 피해나 손해는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한 보상하지 않는다.

제 43 조 보험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 또는 보험보상을 받는데 리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고의나 과실로 생긴 피해나 손해, 자연감모, 부패변질, 녹, 마모 같은 것에 의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 제5장 보험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및 분쟁해결

제 44 조 보험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는 국가보험관리기관이 한다. 국가보험관리기관은 보험사업을 정확히 장악지도하며 보험계약표준조건과

보험료률의 적용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 45 조 다음의 경우에는 벌금을 물린다.

1. 국가보험관리기관과 합의없이 의무적보험, 외화로 하는 보험, 재보험을 한 경우
2. 국가보험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보험계약표준조건이나 보험료를 적용한 경우
3. 년간 재정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사실대로 만들지 않았거나 제때에 내지 않은 경우
4. 정당한 리류없이 보험보상을 하지 않거나 제때에 하지 않은 경우

제 46 조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제 47 조 보험사업과 관련한 분쟁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화국의 재판,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하며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 [부 록 5] 북한의 외국인 투자 관련법

## 1. 외국인투자법

**(1992.10.1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7호,**
**1992.12.10.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4차회의 승인)**

제 1 조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협조를 확대 발전시키는 것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외국투자자들이 공화국 영역 안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 2 조 이 법은 외국투자자들이 외국인투자기업을 창설 운영하는 일반 원칙과 질서를 포괄적으로 규제한다.

외국투자가란 공화국 영역 안에 투자하는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을 말한다.

외국투자기업이란 공화국 영역안에 설립한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 기업을 말한다.

합작기업이란 우리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우리측이 운영하며, 계약조건에 따라 상대측의 투자몫을 상환하거나 이윤을 분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합영기업이란 우리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며, 투자몫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외국인기업이란 외국투자가가 단독으로 투자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 3 조 외국투자가는 공화국 영역 안에 합작기업, 합영기업을 설립할 수 있으며, 자유무역지대 안에 외국인 기업을 창설, 운영할 수 있다.

제 4 조 국가는 공화국의 법에 따라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제 5 조 다른 나라의 기관, 회사, 기업체들과 개인 및 기타 경제 조직들은 공화국 영역 안에 투자할 수 있다.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 동포도 이 법에 따라 투자할 수 있다.

제 6 조 외국투자가는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과학기술, 관광, 유통, 금융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 투자할 수 있다.

제 7 조 국가는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 기술과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 자원개발 및 하부구조 건설부문, 과학기술 및 기술개발 부문에 대한 투자를 특별히 장려한다.

제 8 조 장려하는 부문에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소득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세금을 감면, 유리한 토지사용조건의 보장, 은행대부의 우선적 제공과 같은 우대를 받는다.

제 9 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과 같은 특혜적인 경영활동 조건을 보장받는다.

1. 국가가 따로 정한 품목을 내놓고는 수출입물자에 대하여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이윤이 나는 해로부터 3년까지 소득세를 물지 않으며, 그 다음 2년까지 소득세를 50% 범위에서 덜어 줄 수 있다. 소득세율은 다른 지역보다 낮추어 결산이율의 14%로 한다.

제 10 조 국가는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기업을 창설하거나 그 운영을 위하여 입출국하는 외국투자가들의 수속절차와 방법을 편리하게 정하도록 한다.

제 11 조 민족경제발전과 나라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지고 환경보호의 요구에 저촉되는 대상의 투자는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제 12 조 외국투자가는 화폐재산, 현물재산, 공업소유권, 기술비결을 비롯한 재산과 재산권으로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하는 재산과 재산권의 가치는 해당시기의 국제시장가격에 기초하여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평가한다.

제 13 조 외국인 투자기업은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 지사, 대표부, 출장소를 내오거나 새끼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또는 다른 나라의 회사들과 기업을 연합할 수도 있다.

제 14 조 공화국 영역 안에 설립한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 기업은 우리나라 법인으로 된다.

공화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사, 대표부, 출장소는 우리나라의 법인으로 되지 않는다.

제 15 조 국가는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에 필요한 토지를

최고 50년까지 임대하여 준다.

임대하여 준 토지는 임대받은 기간안에 해당 기관의 승인 밑에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제 16 조 외국인 투자기업은 우리나라 로력을 채용하여야 한다.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정무원 대외경제기관과의 합의 밑에 다른 나라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로력은 해당 노동기관과 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채용하거나 해외하여야 한다.

제 17 조 외국투자가와 외국인 투자기업은 공화국의 해당 법에 따라 소득세, 기업운영세, 재산세를 비롯한 세금을 물어야 한다.

제 18 조 외국투자가는 이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화국 영역 안에 재투자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투자분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소득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제 19 조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가가 투자한 재산은 국유화하거나 국가가 거두어들이지 않는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국유화하거나 거두어들이는 경우에는 해당한 보상을 한다.

제 20 조 외국 투자가가 기업운영에서 얻은 합법적 이윤과 기타 수입, 기업을 청산하고 남은 자금은 공화국의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라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 21 조 국가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비밀을 법적으로 보장하며 외국

투자가와의 합의 없이 공개하지 않는다.

제 22 조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분쟁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절차에 따라 심의 해결하며, 합의에 따라 다른 나라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 2. 합작법

**(1992.10.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작법은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들 사이의 경제 협력과 기술교류를 확대 발전 시키는 데 이바지 한다.

제 2 조 합작기업은 우리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우리측이 생산과 경영을 하며, 합작계약 조건에 따라 상대측의 투자몫을 상환하거나 이윤을 분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 3 조 합작기업은 수출할 수 있는 제품, 선진기술이 도입된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에 조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관광, 봉사부문에도 조직할 수 있다.

제 4 조 국가는 외국투자가가 현대적인 설비와 첨단기술을 투자하거나,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 5 조 공화국 영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이 법에 따라 합작을 할 수 있다.

제 6 조 합작을 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상급기관과 협의하고 외국투자가와 합작계약을 맺은 다음, 정무원 대외 경제기관에 합작신청서를 내야 한다. 이 때 신청서에는 계약서, 경제기술타산서를 비롯한 해당한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7 조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은 합작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0일 안으로 그에 대하여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 8 조 합작기업은 합작이 승인된 후 30일 안에 해당기업 소재지의 도(직할시) 행정경제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 9 조 합작기업은 승인된 합작업종을 마음대로 변경시킬 수 없다.

승인된 업종을 변경시키려고 할 경우에는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0 조 합작을 하는 일방이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려고 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다음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1 조 합작기업은 계약에 따라 외국투자가측의 기술자를 받아 쓰거나, 정무원 대외경제기관과의 합의 밑에 제3국의 기술자를 채용하여 쓸 수 있다.

제 12 조 합작기업은 국가가 승인한 데 따라 생산 및 경영에 쓸 물자를 수입할 수 있으며,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

제 13 조 외국투자가의 투자에 대한 상환과 이윤분배는 합작제품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제 14 조 합작기업에서 생산된 제품과 얻은 수입은 합작계약에 따라 상환 또는 분배의무를 이행하는 데 먼저 쓸 수 있다.

제 15 조 외국투자가가 합작기업에서 얻은 합법적 이윤 기타 수입은 공화국의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라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 16 조 합작 당사자들은 비상설적인 공동협의 기구를 조직할 수 있다.

공동협의 기구에서는 새 기술도입과 제품의 질 제고, 재투자를 비롯한 합작경영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을 협의한다.

제 17 조 합작기업은 경영활동에 대한 결산을 월별, 분기별, 년별로 한다.

합작기업은 규정에 따라 재정부기결산서를 해당기관에 제출하며 재정은행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18 조 합작기업은 계약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는 경우 법이 정한 데 따라 세금을 물어야 한다.

제 19 조 합작 당사자들 가운데서 어느 일방이 합작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기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정무원 대외 경제기관의 승인 밑에 합작기업을 해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가 진다.

제 20 조 합작은 합작기간이 다 되면 끝난다.

합작기업은 합작기간이 끝나거나 기한 전에 해산하는 경우 법이 정한 데 따라 채권 채무관계를 청산하며, 등록 취소절차를 하여야 한다.

합작 당사자들이 합작기간이 끝난 후에도 합작을 계속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정무원 대외경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1 조 합작과 관련한 의견 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분쟁 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 절차에 따라 심의 해결한다.

# 3. 합영법

(1984.9.8.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 제1장 합영의 기본

제 1 조 세계의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기술 교류와 협조를 확대 발전시키는 것은 조선노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일관한 대외경제정책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공화국의 영역 안에서 우리나라의 회사, 기업소와 다른 나라의 회사, 기업소, 개인 사이에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합영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 2 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의 합영은 공업, 건설, 운수, 과학기술, 관광업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할 수 있다.

제 3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다른 나라 합영당사자가 출자한 재산과 기업 운영에서 얻은 소득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 4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합영당사자들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공화국법이 규정한 모든 합법적 권리를 보장한다. 합영회사는 모든 활동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 규범과 규정을 존중하며, 그것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제 5 조 재일조선상공인들을 비롯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들도 이 법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회사, 기업소와 합영할 수 있다.

## 제2장 합영회사의 조직

제 6 조 합영회사는 당사자들이 회사조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 해당기관에 등록하였을 때 조직된다.

제 7 조 합영회사의 출자하는 몫은 합영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정한다. 합영당사자들은 화폐대상, 현물재산과 발명권, 기술문헌 등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값을 국제시장 가격에 준하여 합영 다사자들이 평가한다.

제 8 조 합영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 생기는 회사의 빚에 대하여 합영당사자가 자기의 출자몫을 제3자에게 넘겨 주려고 할 때에는 상대편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9 조 합영회사는 등록된 자금을 줄일 수 없다.

## 제3장 리사회와 경영활동

제 10 조 합영회사는 리사회를 둔다. 리사회는 합영회사의 최고결의기관이다. 합영회사는 규약을 가지며 그에 따라 경영활동을 한다.

제 11 조 리사회는 합영회사 규약의 채택 및 수정 보충, 합영회사의 발전대책, 경영활동계획, 결산과 분배, 관리성원의 임명 및 해임, 재정검열원의 임명 등 합영회사의 중요한 문제를 토의 결정한다.

제 12 조 회사 사장은 합영회사 조직에 관한 계약, 합영회사 규약 및 리사회의 결정에 따라 회사의 경영활동을 조직, 진행하며 자기사업에 대하여 리사회 앞에 책임진다.

제 13 조 합영회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은행에 돈자리를 두며, 합영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다른 나라 은행에도 돈자리를 둘 수 있다. 합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다른 나라 은행에서 대부분 받을 수 있다.

제 14 조 합영회사가 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료, 반제품들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안에서 사 쓸 때, 그 가격은 국제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합영회사가 대외시장에서 물자를 수입할 때는 관세를 물리지 않는다.

제 15 조 합영회사는 자기의 생산제품을 대외시장에 수출할 수 있다.

제 16 조 합영회사가 종업원을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과 합영 쌍방의 계약에 따라 노력을 관리하며 이용한다.

제 17 조 합영회사에서 일하는 다른 나라 사람은 자기가 받은 노임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합영회사에서 일하는 다른 나라 사람은 노임의 일부를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 제4장 결산과 배분

제 18 조 합영회사는 해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경영활동을 결산하여야 한다. 결산은 총수입에서 원가를 보상하고 소득세를 바친 다음, 예비기금, 생산확대 및 기술발전기금을 비롯한 필요한 자금을 공제한 나머지 기금을 합영 쌍방의 출자몫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 19 조 합영회사는 예비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예비기금의 규모와 해마다 조성하는 비율을 따로 정한다. 예비기금은 합영회사에서 결손된 자금을 보충하는 데 쓴다.

제 20 조 합영회사의 결산문건은 재정검열원의 검열과 리사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21 조 합영회사는 결산 기마다 순소득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회사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합영회사는 생산을 시작할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합영회사는 순소득에 적은 경우 소득세의 감면을 청원할 수 있다. 합영회사는 토지를 사용할 때 토지사용료를 물어야 한다.

제 22 조 다른 나라 합영당사자는 분배받은 돈을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 제5장 합영회사의 해산과 분쟁해결

제 23 조 합영회사는 계약에 규정된 존속기간이 끝나면 해산된다. 합영회사를 계속 운영하려면 존속기간에 끝나기 6개월 전에 해당기관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 24 조 합영회사는 계속하여 결손을 내거나 합영회사의 한편 당사자가 자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리사회의 결정에 따라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산할 수 있다.

제 25 조 합영회사를 해산할 때에는 현행 업무를 결속하고 남은 재산을 출자몫에 따라 합영당사자들 사이에 분배한다.

제 26 조 합영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 생기는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문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심의한다. 쌍방의 합의에 따라 제3국의 중재기관에 분쟁문제의 심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 4. 외국인기업법

(1992.10.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9호,
1992년 12.11.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4차회의 승인)

## 제 1 장 외국인기업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관계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들이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외국인 기업을 창설 운영하는 것을 허용한다.

제 2 조 외국인기업은 외국투자가가 기업설립에 필요한 자본의 전부를 투자사여 창설하며,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 3 조 외국투자가는 전자공업, 자동화공업, 기계제작공업, 식료가공공업, 피복가공공업, 일용품공업과 운수 및 봉사를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외국인 기업을 창설 운영할 수 있다.

나라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기업은 창설할 수 없다.

제 4 조 국가는 외국투자가가 투자한 자본과 기업운영에서 얻은 소득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 5 조 외국투자가는 공화국의 법과 규정을 존중하고 철저히 지켜야 하며, 인민경제발전에 저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 6 조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 동포들도 이 법에 따라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독자적으로 기업을 창설 운영할 수 있다.

## 제 2 장 외국인기업의 창설

제 7 조 외국인기업을 창설하려는 외국투자가는 외국인기업 창설신청서를 정무원 대외 경제기관에 내야 한다.

이 때 신청서에는 기업의 규약, 경제기술타산서, 투자가의 자금 신용확인서를 비롯하여 심의 비준에 필요한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8 조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은 외국인 기업 창설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80일안에 관계기관들과의 협의를 거쳐 그 창설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 9 조 외국투자가는 기업창설이 승인되면 30일안에 기업 소재지의 도 행정경제위원회에 기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기업을 등록한 날이 외국인기업 창설일로 된다.

외국인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20일안에 기업소재지의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 10 조 외국인기업은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 밑에 우리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 새끼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또는 다른 나라의 회사들과 기업을 연합할 수도 있다.

제 11 조 외국투자가는 외국인기업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관심을 우리나라 해당 건설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제 12 조 외국투자가는 승인받은 외국인기업 창설신청서에 지적된 기간안에 투자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한 기간안에 투자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투자기일을 연장할 수 없다.

제 13 조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은 외국투자가가 투자기간안에 정당한 이유없이 투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미 승인한 외국인기업 창설을 취소할 수 있다.

## 제 3 장 외국인기업의 경영활동

제 14 조 외국인기업은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이 승인한 기업의 규약 범위안에서 경영활동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 15 조 외국인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도행정경제위원회에 생산 및 수출입 계획을 내야 한다.

제 16 조 외국인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우리나라에서 구입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들여올 수 있으며,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 팔 수도 있다.

제 17 조 외국인기업이 우리나라의 원료, 자재, 설비를 사거나 생산한 제품을 우리나라에 파는 것은 공화국의 해당무역기관을 통하여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제 18 조 외국인기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은행에 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외국인기업은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밑에 우리나라의 다른 은행이나 다른 나라 은행에 돈자리를 둘 수도 있다.

제 19 조 외국인기업은 기업 소지재 안에 부기장부를 두어야 하며, 경영계산을 공화국의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재정부기 계산규범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 20 조 외국인기업은 기업운영과 관련한 노력을 기업 소재지의 노동기관과 맺은 계약에 따라 우리나라 노력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채용한 노력을 해고할 수 있다.

외국인기업이 다른 나라 기술자, 기능공을 채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정무원 대외경제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 21 조 외국인기업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은 직업동맹조직을 내올 수 있다.

직업동맹조직은 공화국 노동법규에 따라 종업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외국인기업과 노동조건 보장과 관련한 계약을 맺고 그 이행을 감독한다.

외국인기업은 직업동맹조직의 활동조건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 22 조 외국인기업은 기업운영에서 얻은 합법적 이윤을 재투자할 수 있으며, 공화국의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라 국외로 송금할 수도 있다.

제 23 조 외국인기업이 보험에 들려고 할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보험에 들어야 한다.

제 24 조 외국인기업은 법이 정한 데 따라 세금을 물어야 한다.

제 25 조 외국인기업이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들여오거나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때에는 그에 대하여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 26 조 외국인기업은 등록자본을 늘일 수 있다.

외국인기업이 등록자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고 할 경우에는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기업은 존속기간안에 등록자본을 줄일 수 없다.

제 27 조 정무원 대외경제기관과 재정기관은 외국인기업의 투자 및 세무정형을 검열 감독할 수 있다.

## 제 4 장 외국인기업의 해산과 분쟁해결

제 28 조 외국인기업은 승인된 존속기간이 끝나면 해산된다.

외국투자가는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업을 해산하려고 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경우에는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9 조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외국투자가와 외국인기업이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 그 정상에 따라 기업을 중지 또는 해산시키거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제 30 조 외국투자가는 외국인기업이 해산되거나 파산되는 경우 기업을 등록한 도행정경제위원회에 해산 또는 파산등록을 하여야 한다.

외국인기업의 재산은 청산수속이 끝나기 전에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다.

제 31 조 외국인 기업과 관련한 의견상 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분쟁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절차에 따라 심의해결한다.